

국적회복허가 신청서

※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접수자	확인자	처리기간
신청인 인적사항	현재 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(한글)	(한자)	성별 [] 남 [] 여	
	성명(외국명)	생년월일		
	전화번호(휴대폰)	전화번호(주택)		
	전자우편(E-mail)			
	국내 주소			
	외국 주소			
	예정 등록기준지			
한국 국적 상실 일자	년	월	일	
한국 국적 상실 원인	[]외국 국적 취득 []국적이탈 []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불이행 []국적선택불이행 []국적선택명령 불이행 []기타			
국적회복을 하려는 사유				
수반취득	만 19세 미만의 자녀 ()명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[]신청합니다. []신청하지 않습니다.			
1. 「국적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합니다.				
2. 만약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.				
3. 각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적회복허가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.				
4. 신원조회 등 국적회복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(법정대리인)				
법무부장관 귀하				
첨부서류	3쪽 참조			수수료 3쪽 참조

※ 신원조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기재합니다.

병역 (남자만 기재)	구분	①[]병역복무를 마침 ②[]제2국민역 편입					
	해당 일자 (①・③의 경우)	③[]병역면제 ④[]해당 사항 없음					
	사유 (②・④의 경우)	년 월 일					
학력	년 월 일 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						
	년 월 일 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						
	년 월 일 학교 졸업(중퇴, 재학중)						
경력	기관 및 업체명	기간	직책(직급)	상벌관계(일자)			
생계유지 능력	현재 직업	(직장명)	(재직기간)	(소재지) (전화번호)			
	월 수입	연금					
	거주하는 주택의 종류 []자가(원) []전세(보증금: 원) []월세(보증금: 원, 임대료: 원)						
	보유한 부동산 시가 만원	예금잔고 만원	가족(배우자 등)의 이름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:				

※ 본국,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(「출입국관리법」 위반사실 포함).

범법 사실	구분	일자	위반내용(죄명)	처분결과
	범법 장소			
	대한 민국			[]수사(재판) 중 []기소유예 []집행유예(년 월) []벌금(원) []징역(년 월) []기타()
				[]수사(재판) 중 []기소유예 []집행유예(년 월) []벌금(원) []징역(년 월) []기타()
		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		
	본국 또는 제3국			[]수사(재판) 중 []기소유예 []집행유예(년 월) []벌금(원) []징역(년 월) []기타()
				[]수사(재판) 중 []기소유예 []집행유예(년 월) []벌금(원) []징역(년 월) []기타()
		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		

※ 신청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.

	관계	성명	국적	생년월일	성별	거주지	국내거주자 연락처	수반취득 신청자	북한 거주자
								(해당란에 √표)	
가족	아버지			년 월 일					
	어머니			년 월 일					
	배우자			년 월 일					
	자녀			년 월 일					
	자녀			년 월 일					
	자녀			년 월 일					
	자녀			년 월 일					
				년 월 일					
				년 월 일					
				년 월 일					
				년 월 일					

국내 연고자	관계	성명	국적	생년월일	거주지	연락처
(위에 기재한 가족은 제외)				년 월 일		
				년 월 일		
				년 월 일		

첨부서류	1.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.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(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) 4. 신원진술서 2통(「국적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) 5.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.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7. 「국적법」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 8.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(「국적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9.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(「국적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1인당 20만원 (수반취득자 제외)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